

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

제정 2002. 06. 17.

개정 2023. 03.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발명진흥법」 및 「기술이전및사업화 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등의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2021.4.1.>

1. “교직원 등”이라 함은 본교(산학협력단과 의료원 및 부속병원 등을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조교 포함), 직원, 연구원(전임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학생연구원 포함) 임상강사, 전공의 등을 말한다.
2.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3.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4.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5.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자유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 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 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 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7. “출원유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비롯하여 기타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계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 제2항에 의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직원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위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학협력단은 교직원의 해당 권리지분을 승계한다.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4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면 제출하거나, 본교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 등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면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개정 2021.4.1.>

1. 발명신고서(서식 제1호)
2. 양도증(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3호)
4. 발명의 내용 설명서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서 규정한 양식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 및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신설 2021.4.1.>

[전문개정 2013.11.7]

제5조(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주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제6조(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문서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장제목 변경 2023.3.21.>

제9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21.>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성심산학협력단장, 성의산학부단장, 성 의행정부단장의 당연직 위원과 6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19.1.26>
- ② 위촉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각 교정 산학협력팀장이 되며, 심의안건 정리 및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개정 2019.1.26>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1.>

1. 직무발명 결정 및 승계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 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본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직무발명 및 지적재산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3.3.2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3.3.21.>
-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외되며 위원회 개최 정족수, 의결정족수 및 의결수 산정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출원 및 비용부담

- 제14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 없이 출원 등을 하며, 그 사실을 주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주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 ④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해외출원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장 보상

- 제16조(보상의 시행)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시행한다.
1. 출원보상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시행하는 보상
 2. 등록보상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시행하는 보상
 3. 실시·처분보상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하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하는 보상
 4. 출원유보 보상 : 본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시행하는 보상
-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시행함에 있어서 비금전적 보상 및 금전적 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시행기준·산정방식·시행시기등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7조(공동발명자의 보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발명자를 평가하여 배분한다. 이 경우, 공동발명자사이에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되지 아니한 별도의 지분이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로 본교 혹은 산학협력단에 본래 약정된 지분에 따라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

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제18조(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인출원의 경우 및 제20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칙

제20조(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대학을 퇴직·졸업·수료·자퇴 또는 퇴학(이하 “퇴직 등”이라 한다)한 후에도 적용한다.

④ 위 제1 내지 제3항을 위반한 자는 본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제21조(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자를 상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1.4.1.>

1. 제4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0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1조의 출원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모인출원의 경우

제23조(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4조(퇴직 등 후의 취급) 교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본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준용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디자인권, 상표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②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 ③ 교직원이 본교에 소속한 상태에 있는 한 직무발명을 이용하여 창업하고 그 창업기간동안 발명·고안 및 창작한 발명에 관하여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개정 규정(제10조)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중앙의료원의 '직무발명 규칙'은 개정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본 규정이나 중앙의료원의 '직무발명 규칙'에 의해 발명자로부터 승계하여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나 중앙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 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5조, 제14조)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산학협력단에 의하여 승계결정 또는 출원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승계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0조)은 201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2조, 제17조, 제22조, 제25조)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2조, 제4조, 제11조, 제22조,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장, 제9조, 제11조, 제12조)은 2023년 3월 21일부로 시행한다.

○

○

<개정 2021.4.1.>

[서식 제1호]

관리번호 :

처리부서 : 산학협력팀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 명칭	국문 : 영문 :				
발명자정보(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이메일	지분(%)
국문(영문)					
관 련 연구과제	과제여부 : 유(), 무()				
	과제번호 :		과제고유번호 :		
	과제명 :				
	연구지원기관 :		연구지원사업 :		
	과제기간 :		총연구비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특허명세서(서지사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명의 공개여부	공개여부 : 공개(), 미공개()		공개유형 : 논문발표(), 학술지 게재(), 연구보고서(), 기타()		
	공개일/공개매체명 :				
	발표일 : 년 월 일				
기술분류 :					
심사청구유무:		출원인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타기관 공동출원()			
◆타기관 공동출원 추가 정보 기입(기관명/지분율/발명자정보)					
상기의 발명을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신고자 (인) </div>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개정 2021.4.1.>

[서식 제2호]

처리부서 : 산학협력팀

양 도 증

발명의 명 칭				
양 도 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양 수 인	소 속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위 / 성명	단 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위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및 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신설 2021.4.1.>

[서식 제3호]

처리부서 : 산학협력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발명신고 관련 업무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

제공 항목	이용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사번, 연락처, 이메일정보	발명신고 접수 및 특허 출원 관련 업무	출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이 소멸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발명신고 접수 및 특허 출원 업무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이룸리온, 특허법인 정안, 위 특허법률사무소, 양우 특허법률사무소, 명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아이시스,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에이치애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특허법인 웰, 발명자 지정 비전담(특허)사무소, 공동출원기관 지정 비전담(특허)사무소	본인식별 및 발명의 출원·등록·연차 유지 과정 업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이메일 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달성 시점까지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부천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은평성모병원, 성의교정	본인식별 및 병원·연구자 평가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사번, 연락처, 이메일 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달성 시점까지

※ 연구자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발명신고 접수 및 특허 출원 업무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자

구분(소속)	성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제 3 자 동의 여부	서명
		동의	동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

직무발명 및 보상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0. 12. 01.

개정 2023. 03. 21.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무발명 및 보상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 등의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수행 중인 과제를 위하여 활용하는 연구원(대학원생 등)에게 ‘본 규정’ 제20조에 의거 본교 소정양식(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정보비밀유지각서’를 접수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시 ‘발명신고의무이행확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첨부한다.(별지 제2호 서식)

제3조(변리사 선임) 발명신고 시 출원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은 자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인은 희망 변리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

제4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사업비에서 출원비용 등을 충당하는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및 승계 의사 결정을 위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 <삭제 2021.3.3.>

③ 본 규정 제11조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통한 서면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제5조(지식재산권 운영 및 유지 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의 계좌를 별도 관리하며, 관련 직무발명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등록 후 5년 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은 매년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술이전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3.3., 개정 2023.3.21.>

1. 산학협력단이 발명자에게 통보
2. 발명자 의견서 제출(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포기 간주)
3. 위원회 결정

③ 본조 제2항 3호에 따라 특허권을 1년 단위로 최대 2년 간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유지기간 종료 후에도 발명자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3.3.>

[조 제목 변경 2021.3.3.]

제6조(보상의 시행) ① 본 규정 제16조와 관련하여 각종 보상의 시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비금전적 보상 : 출원보상, 등록보상, 출원유보보상을 교수업적 평가 등에 반영하며 세부사항은 각 교정의 결정에 따른다.
2. 금전적 보상 : 실사처분보상금은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다.
 - 가. 순수익 1천만원 이하 : 70%
 - 나. 순수익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0%
 - 다. 순수익 1억원 초과 : 50%

라. 순수익이라 함은 출원 및 등록(유지)비, 계약 관련 제반 경비, 외부기관 공동 소유 지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마.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 자체 보상규정에 준하여 시행할 수 있다.

바. 교원 개인비용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유지)과 관련된 제반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보상기준은 순수익의 90%로 한다.

② 교직원 창업에 의한 지식재산권 발생 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준하여 발명신고를 한다.

제7조(각종 계약양식) ① 산업체 지원 연구과제의 계약은 ‘표준연구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별지 제3호 서식)

② 기술이전 계약은 ‘기술이전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별지 제4호 서식)

제8조(기 등록 교원명의의 지식재산권 승계) ① 본 규정 개정 이전에 출원 및 등록된 교원 명의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승계절차를 실시하며, 승계 실시일 이후 발생하는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본교에서 부담한다.

② 상기 제1항의 승계절차 미실시 교원에 대하여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향후 교외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2. 교내 연구비 지원 제한
3. 현재 연구관련 지원 사항 제한: 연구공간 및 공동연구장비 사용 등
4. 기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23.3.21.>

③ 본 규정 제21조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는 상기 제2항의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3.3.21.>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이전에 발생한 본교 지식재산권은 본 산학협력단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한 규정 혹은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4조, 제5조)는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은 2023년 3월 21일부로 시행한다.

○

○

<별지 제2호 서식>

발명신고 의무이행 협약서

본인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교내·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수행 결과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하여 발명신고 절차 및 양식에 의거 대학에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주민번호 :

성 명 : (서명)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연구계약서

연구과제명 :

계약당사자 :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단 장 0 0 0 (이하, "을"이라 한다)

연구책임자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000전공 (교실) 교 수 000(이하 "연구책임자"라고 한다)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 ①본 계약서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②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본 연구완료 후 "갑"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 ③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비는 독립당사자 간의 정상거래(arm's length transaction)에 따른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이어야 하며, "갑"의 제품과 관련하여 유리한 조달 또는 처방결정을 제공하기로 하는, 또는 "갑"과 "을"간에 발생한 사업의 가치 또는 양에 관한 어떠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정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본 계약에서 "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상의 연구 수행 중에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연구시설, 부속품,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 및 기술, 각종 정보, 발견, 발명, 아이디어, 노하우, 샘플, 디자인, 자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을 포함한다.
- ②본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창출된 "성과물" 중 아이디어, 발명, 고안, 디자인, 저작물, MASK WORK, LAYOUT, 노하우 등과 같이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③본 계약에서 "공동특허"란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를 말하며, 상기 출원 및 등록 특허로부터 파생된 변경출원, 분할출원, 계속출원, 재심사(Re-examination), 재발행(Reissue) 등으로부터 등록된 일체의 특허를 포함한다.

제3조 (연구기간)

총 연구기간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이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금 정 (₩00000000)이며, 연구비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갑"이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1차 지급 : 본 연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금0000원정(₩00000000)

▶2차 지급 : 최종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금0000원정(₩00000000)

②제3조에 따라 연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연구비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연구비와 별도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갑"의 요청 시 "을"은 연구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서식에 의거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결과의 제출 및 발표)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 자료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보유토록 한다.

②제1항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발표회 개최 여부 및 세부 내용은 "갑"과 "을"의 협의로 정한다.

제6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할 수 있으며, "갑"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갑", "을" 및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연구책임자는 "갑"과 사전에 비공개에 동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당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발표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결과 등의 귀속)

①<유형적 재산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시작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을"의 소유로 한다. (선택 사항: 다만, "갑"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②<무형적 재산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출원/등록비용>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을"은 "공동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 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협력한다.

2.<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갑"이 본 계약결과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제4조 연구비 총액의 50~150%를 지급한다.

3.<지분처분> "을"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갑"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이전 방법 및 대가는 당사자의 별도 합의로 정한다.

4.<제3자에게 실시권 허여시의 수익배분> 본 계약의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실시권 설정시의 세금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상대방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5.<CROSS-LICENSE 또는 PACKAGE-LICENSE의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와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을 체결하는 경우 본 지식재산권의 실시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6.<관련 특허권 실시> "을"이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이하 "A"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갑"이 본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A"를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을"은 "갑"에게 "A"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갑"은 "A"의 실시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을"에 지불하여야 한다.

7."갑"이 본 계약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실시함에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의 침해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최선을 다해 "갑"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연구성과의 발표> "을"은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을 사용 또는 대내외 세미나 또는 간행물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표할 수 있으며, "갑"에게 15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 발표 시에 Acknowledgement에 "갑"을 표시할 수 있다.

④<신의성실 규정> 제3자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을"은 "갑"이 요구하는 자료를 "갑"에게 성실하게 제공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명칭 사용)

"갑"은 사전 승인 없이 "을"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을"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을"과 연구 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을"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을"이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결과물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을"이 "갑"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 및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갑"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갑"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폐업, 휴업 등 중요한 변동이 있어 본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의 연구비 지급을 위반하여 "을"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서도 4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구결과 성과물 등의 귀속은 제8조에 의하며, "을"은 그때까지 소요된 연구비용을 정산하여 4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이를 확인 후 정산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갑"과 "을"은 제7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⑤ 기타의 경우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원칙에 의한다.

제13조 (기술지원 및 책임)

① 계약 완료 후 "을"은 "갑"에게 기술 지원(자문)을 할 수 있다.

② "갑"의 기술요원이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을"의 연구 장소에 파견되는 경우, "을"은 연구시설,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의 연구환경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③ 제2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갑"의 기술요원의 파견에 의한 환경 제공 등의 비용은 양

방의 협의에 의해 "갑"이 지불한다.

제14조 (불가항력)

"갑"과 "을"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사항과 진전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 (소송의 관할)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 중재에 의해서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 날인한 후 "갑"과 "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연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갑) 주 소 :

(을)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단 장 0 0 0 (인)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연구책임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000전공 (교실) 교 수 000 (인)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실시(허여)계약서

■ 계약명 :

20 년 월 일

○ 계약당사자

‘갑’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0 0 0 (인)

‘을’

(인)

기술이전책임자 : 000 전공 (교실) 교수 0 0 0 (인)

담당자 :
연락처 :

담당자 :
연락처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주)000텍’ (이하 “을” 이라 한다.)은 (갑)과 (을)이 공동소유한 “ 0000 ” 를 (을)이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계약기술” 이란 00000000 관련 기술을 말한다.
2. “계약특허” 라 함은 (갑) 소유한 대한민국 특허 출원번호 ①0000 을 말한다. 단, 출원중인 산업재산권이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을)은 본 계약상의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제품” 이라 함은 “계약기술” 을 사용하여 (을)이 생산할 000제 제품 (가칭 0000)을 말한다.
4. “생산개시” 라 함은 (을)이 “계약기술” 을 이용하여 “계약제품” 을 최초로 상업 생산한 것을 말하며, 그 해당 일을 “생산개시일”이라 한다.

제2조 (허여 권리의 내용)

-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기술” 을 전용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을)에게 (갑)이 가지고 있는 “계약특허” 와 관련된 공동권리를 독점적으로 허여한다.
- ② 본조 제①항의 (갑)의 권리라 함은 “계약특허 “에 대하여 (을)과 공동으로 소유한 권리이며 “계약제품” 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③ (을)은 본 계약 발효일 이후 “계약특허” 에 대한 출원, 보정, 등록, 유지, 방어, 실시권 설정 및 명의이전 등에 소요되는 일체비용을 부담한다.
- ④ (갑)은 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약특허” 권리와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⑤ (갑)은 “계약물질”을 이용하여 실시한 ‘0000000000 ‘ 결과보고서를 날인 후 본 계약체결일 이전에 (을)에게 공식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본 결과보고서의 활용을 (을)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여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생산개시일 통보)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8조 제③항 및 제④항 또는 제12조에 의하여 해지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산개시” 를 하여야 하며, “생산개시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 “생산개시일” 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개시일” 은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기할 수 있다.

제4조 (허여 대가)

1. (선급기술료) (을)은 선급기술료로 금액 금0000 원정(W00000 부가세 별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2. (경상기술료) (을)은 경상기술료로 “계약개시일”로부터 00년간 본 “계약제품” 국내 총 매출액의 00% 및 국외 총 매출액의 00%를 각각 제5조에 의거 (갑)에게 매년 현금으로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3. 본 계약에 따라 행해진 모든 지불은 어떠한 이유라도 (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경상기술료 계산)

- ① (을)은 제4조의 경상기술료를 기업회계 기준(기간)에 의거 계산하여 익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 경상기술료를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 ② (을)은 경상실시료 지급 시에 공인회계사에 의해 검증된 경상기술료 계산서와 매출액이 산출된 근거가 기술된 서면보고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갑)은 경상기술료 계산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계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회계 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개량기술의 실시)

(갑)과 (을)이 본 계약의 기간 중 “계약특허”의 개량기술에 대하여 공동으로 취득하는 특허(출원 중인 것을 포함)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정한 실시대가 및 기타의 조건변경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한다.

제7조 (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

- ① (갑)은 (을)에 의한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해 (을)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의 지불을 포함하여 (을)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갑)은 2조 5항의 결과보고서 내용 및 결과의 하자에 의해 (을)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 ② 제3자가 “계약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갑)과 (을)은 상호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 ③ (을)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약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계약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출원 중인 “계약특허”에 대

하여 거절결정의 확정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계약기술” 및 “계약특허”에 대한 (갑)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지되며 이때 (갑)은 (을)로부터 기 지급 받은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계약기술”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갑)은 기 지급 받은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하며, (을)은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1. “생산개시일” 이후 (을)이 조업중단 등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을)이 제4조에 따른 실시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치 아니할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명칭사용)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상대방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할 경우,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단, (갑)이 “00”을 이용하여 실시한 ‘00000’ 결과보고서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중요사항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면책의 대상이 된다.

제16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 ② 본 계약은 (갑)과 (을)간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갑)과 (을)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18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